농림축산식품부

#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보도 일시 | 2021. 1. 3.(월) 11:00 | 배포 일시 | 2021. 1. 3.(월) 09:00 |
|---|---|---|---|
| 담당 부서 | 방역정책국<br>방역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이동식 (044-201-2511) |
| | | 담당자 | 사무관 김정주 (044-201-2522) |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 주요 내용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12.9.), **국무회의**(12.28.)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2. 1. 4.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된 **수의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물병원 이용자**는 수의사로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게 됩니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동물병원**에 **게시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정부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 소위**에서 8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병합심사**되어 **대안**이 **마련**되었고, **국회 본회의**(12.9.), **국무회의**(12.28.)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2. 1. 4. 공포**됨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 **(주요내용)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前)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②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함
  *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 **(시행일)**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 공포 후 1년**,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 공포 후 2년**

③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음**
  *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
- **(시행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 1년,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 2년

④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
- **(주요내용)**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2년

⑤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
- **(주요내용)**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1년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하여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수의사가 제1항에 따라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및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동물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동물병원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4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

지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의2.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4, 제30조제3항, 제33조제7호의2, 제41조제2항제6호의4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20조의3 및 제41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진료비용 고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각각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1명의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에 대하여는 같은 호의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1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의사의 수가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제20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41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